

단 가 계 약 승 낙 사 항

[2020. 7. 1. 시행]

1. “경북권역재활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일정기간 단가납품계약의 계약이행 예정량은 계약당시 “경북권역재활병원”의 추정량으로서 이행과정에 증감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보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3.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경북권역재활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상 분할납품이 가능하고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경북권역재활병원”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0.8/1,000 나. 시설공사 : 0.5/1,000
다.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 1.3/1,000 라.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2.5/1,000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북권역재활병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경북권역재활병원 회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5. 제4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의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전 별도 예치시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경북권역재활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완료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북권역재활병원”은 청구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지급계좌는 “경북권역재활병원”의 입점은행계좌로 개설하고, 입점은행계좌가 아닌 경우 송금 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의약품(조영제 포함): 6개월 이내 대가지급
나. 의약품 외 기타품목(용역, 공사 포함): 3개월 이내 대가지급
7. 동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의 이행과정 또는 이행 완료후 공급물품의 불량 또는 관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경북권역재활병원”에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상당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그로 인한 소송사건이 발생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9. “경북권역재활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관한 관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판매하는 제품의 보험정보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경북권역재활병원”에 서면 및 유선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으로 구입한 의약품 또는 진료재료의 구입단가가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심사기관에서 설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삭감될 경우 그 삭감액을 “경북권역재활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납품이 지연되어 병원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북권역재활병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북권역재활병원”이 다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계약물품의 납품, 재고관리, 대금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경북권역재활병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요구할 때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가. 납품 및 재고관리
 - 1) “계약상대자”는 “경북권역재활병원”에서 집계된 동 계약물품의 평균소모량에 의거 연간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진료의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안전재고량(병원 월평균 소모량의 1/2 이상)을 병원이 지정하는 창고에 비치하여야 한다.
 - 2) 이 경우 병원 창고에 비치한 물품은 “경북권역재활병원”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경북권역재활병원”에 대여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경북권역재활병원”이 관리한다.
 - 나. 대금지급방법
 - 1) 비치물품의 사용후 계약상대자의 납품거래명세서와 병원 사용부서의 검수보고서에 의거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 2) 사용정산 회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경북권역재활병원”의 창고에 항상 안전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도로 “경북권역재활병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 지시된 물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13. 의약품 또는 진료재료의 경우 계약기간 중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의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아래 각 목과 같이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북권역재활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보험상한금액 변동의 경우 변동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 나. 급여여부 변동으로 보험상한금액이 기존 계약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 보험상한금액 이하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의 최소단위(“경북권역재활병원”과 상의후 변경가능)포장겉면에 “경북권역재활병원”이 인식할 수 있는 Bar-code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동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경북권역재활병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6.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북권역재활병원 회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청 렬 계 약 특 수 조 건

[2020. 7. 1. 시행]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경북권역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